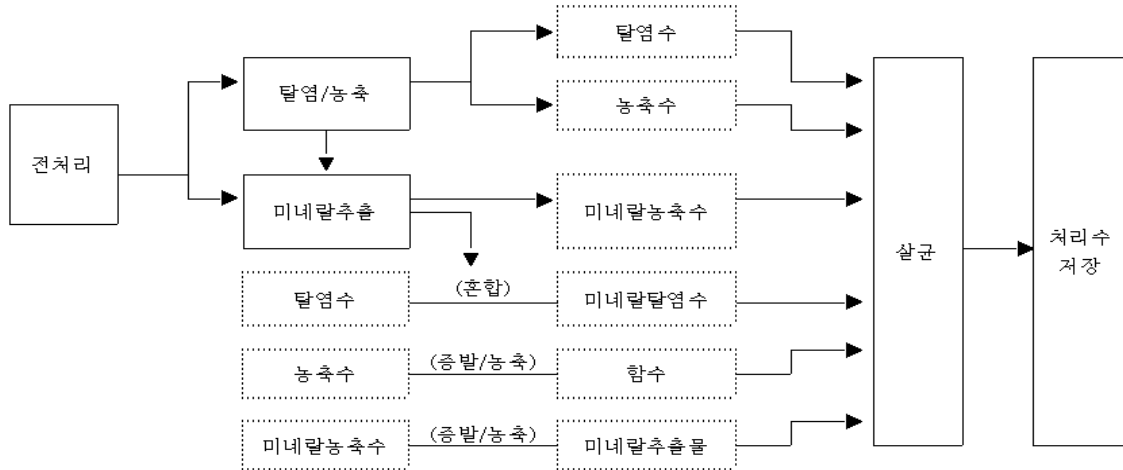


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(제34조의2 관련)

1. 표준가공공정

가. 표준가공공정(표준공정보다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)



나.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,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.

다. 가공공정은 막(역삼투막, 나노필터막 및 전기투석막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여과 공정 또는 증발농축공정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공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해양심층수로부터 위생적인 방법으로 추출한 미네랄은 혼합할 수 있다.

라. 해양심층수처리수 중 특정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온교환수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마.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종 제품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
2.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관리

가. 전처리설비

전처리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여과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투과수가 해양심층수보다 낮은 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나. 탈염 및 농축설비

탈염 및 농축설비는 막 여과법, 증발농축법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안정적인 가공이 보장되도록 막 교체 및 세정 등을 실

시해야 한다.

다. 미네랄 추출 및 혼합설비

- 1) 해양심층수나 농축수에서 미네랄의 추출은 증발농축법, 막 여과법 등을 위한 장치를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각각의 장치를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2) 혼합은 밀폐된 관로와 용기 또는 청정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.

라. 제조시설 등의 살균

자외선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오존설비는 이용할 수 없다.

마.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

- 1)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는 밀폐하거나 에어필터를 설치해야 한다.
- 2)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바. 설비·자재

- 1) 각종 설비는 모두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의 제품이거나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, 에스티에스(STS)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.
- 2) 배관자재는 내식성 위생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.
- 3) 모든 설비 및 배관은 약품세정(Clean In Place)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.